

國際間의 關係

# 先行돼야 할 國際法上의 管轄問題



朴椿浩

〈高麗大 法科大學 教授〉

南極에 관한 현행 基本 條約은 1959년 12월 1일에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조인한 것이다. 이것은 全署名國이 비준하여 1961년 6월 23일에 발효했다.

위의 12개 當事國은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日本, 뉴질랜드, 노르웨이, 南阿연방, 蘇聯, 英國, 美國 등이었다. 따라서 第2次 世界大戰 후의 東西冷戰時期에 蘇聯이 美國主導下의 國際條約에 가입한 최초의 예였다. 그리고 발효후 2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加入國數가 35개국으로 늘었으며, 이중에는 南北韓도 포함된다(韓國은 1986년 11월에 北韓은 1987년 1월에 가입했다). 여기에서는 주로 國際法의 측면만을 논하기로 한다.

## ◇ 條約 採擇의 背景

위의 12개 當事國 중에서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英國 등 7개 국은 南極의 일부에 대한 主權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現代 國際法 下에 정식으로 主權을 주장한 최초의 先例는 1908년 英國의 경우였다.

그후 1920년대에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프랑스가, 1930년대에 호주와 노르웨이가, 그리고 1940년에 칠레가 뒤를 이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처음부터 南極進出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美國과 蘇聯은 主權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한편 日本 역시 南極에 대한 관심은 깊었으나

적극적인 주장은 내세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51년 聯合國들과의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에서 南極에 관한 모든 權限을 포기했다.

獨逸의 경우는 히틀러時代에 東經 17度와 西經 5도 사이의 부채꼴에 대한 主權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노르웨이가 이미 주장한 地域과 중복된 것이었으나, 그후 西獨聯邦은 이에 대한 贊反의 의사표시가 없었다.

歷史的으로 南極에 대한 主權 주장의 근거는 자못 다양하다. 예를들면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주장은 스페인의 주장을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스페인의 주장은 다시 15세기 말엽에 教皇이 教書로 地球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兩分해 주었던 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르러 南極에 관한 國際社會의 관심이 다시 고조된 까닭은 1957~1958년간의 소위 國際地球觀測年度(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 IGY) 하의 과학조사의 결과에 있다. 이것은 1957년 7월 1일부터 18개월간 60개국의 科學者들이 본격적인 南極探查를 했던 것을 말한다.

IGY는 그 규모에 있어서 그전의 南極探查 활동보다는 훨씬 큰 것이었다. 그러나 歷史的으로 보면 8개국이 參加한 1882년 8월의 제1차 極地觀測等(First Polar Year)과 주요 國家들이 거의 모두 참가했던 1932년 8월의 제2차 極地觀測等(Second Polar Year) 활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 ◇ 條約의 内容

위와 같은 배경에서 성립한 총 14개조의 南極條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第1條〉는 平和的 이용 즉 軍事的 목적으로 的 이용을 배제한다.

〈第2,3條〉는 科學的 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加入國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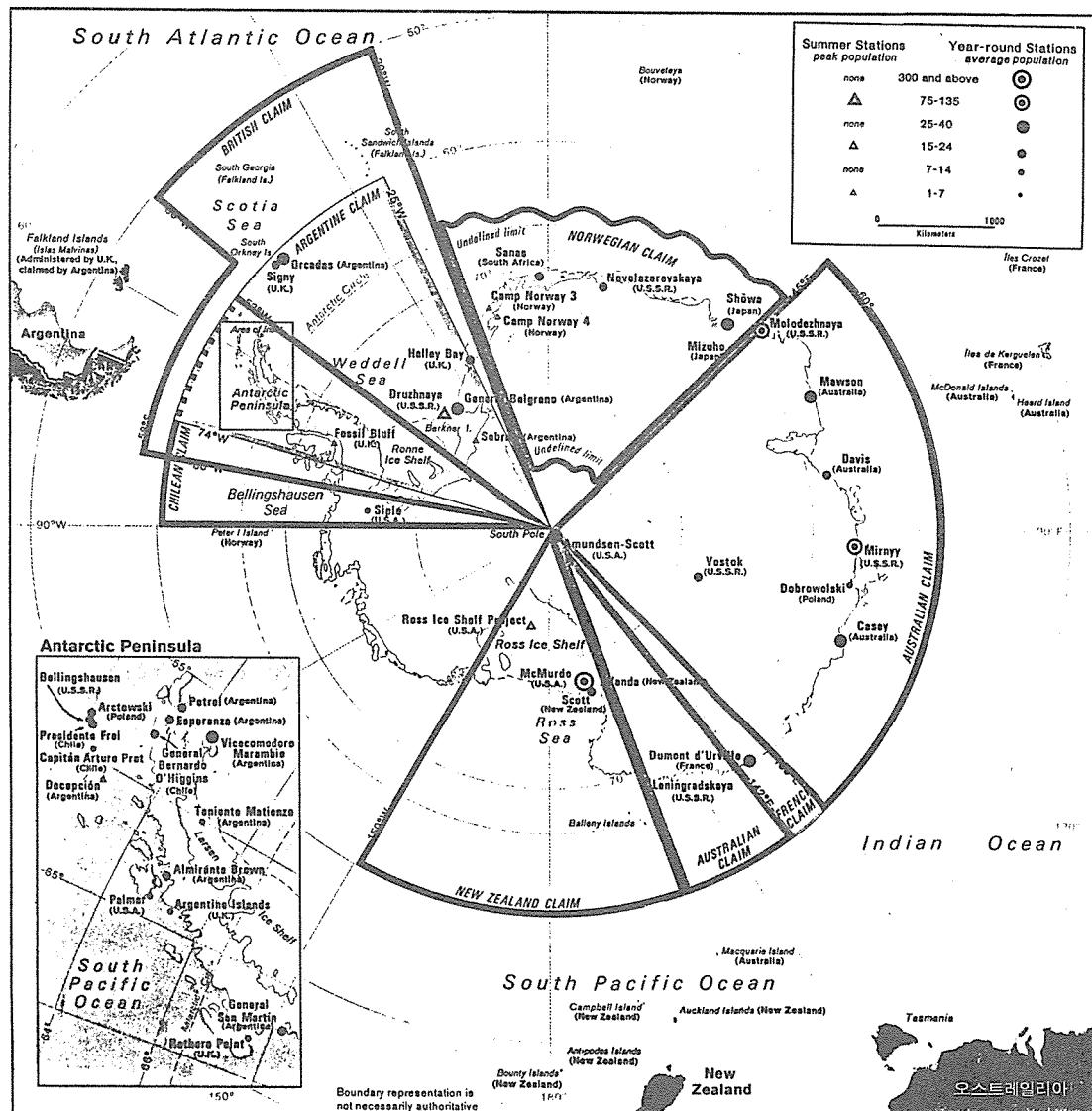
〈第4條〉는 이 條約은 主權을 주장하는 加入國들의 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그러한 나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불가

불 필요했던 것 같다. 그러나 반면에 이 條項은 領土主權 주장을凍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第5條〉는 南極에서 핵폭발이나 방사능물질의 폐기를 금지한다.

〈第11條〉는 이 條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平和的 해결을 규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國際司法法院에 제소할 것을 규정한다.

〈第13條〉는 가입자격을 규정하는 바, 그 자격으로는 UN會員國 혹은 모든 會員國이 만장일치로 가입을 초청한 나라들로 局限한다.



參考로 이 <第13條>에 規定된 加入자격은 南北韓의 加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韓國의 加入은 親北韓系 加入國들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따라서 그러한 나라들, 예를들면 中共·蘇聯의 韓國加入 동의는 北韓加入을 조건으로 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政治的 타협은 후일에 南北韓의 UN가입에 있어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南極體制下의 執行기관

南極條約은 形式상으로는 모든 나라에 개방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소위 南極條約協議當事國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ATCP)들이 핵심적인 집행기능을 행한다. 즉 모든 중요한 政策은 이 ATCP가 결정한다.

ATCP는 條約의 최초 12개 署名國과 그후에 이 地位를 획득한 加入國들로 구성된다. 이 두 번째 그룹의 加入國들은 南極에 상설기지를 설치하거나 科學的인 탐험활동을 통하여 南極開發에 실질적인 「貢獻」을 한 나라들이다. 그 代表의 인 예로는 폴란드이다. 이 나라는 이미 北極탐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南極에 있어서도 蘇聯의基地를 利用하여 일찍부터 탐사활동을 계속 해왔다.

현재로 ATCP에 추가된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南極體制下의 執行機能은 12개 原署名國과 이 6개국을 포함 18개국이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南極條約의 35개 加入國의 地位는 12개 原署名國, 추가로 加入된 ATCP會員國, 그리고 일반 加入國 등 3가지로 나눈다.

#### ◇ 國際化 動向

UN은 1973년에서 1982년까지 10년간 무려 거의 100주간 이상 長期間에 걸쳐서 제3차 海洋法會議를 했다. 그 결과 1982년 12월에 자마이카에서 史上 최초로 종합적인 海洋法協約을 채택했다. 전문 320條와 9개의 附則으로 된 이 協約

은 南極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이 海洋法協約은 國家管轄權 밖의 深海底資源을 「人類의 共同遺產」으로 규정했다. 그후 UN에서는 이 새로운 概念은 外界와 南極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運動이 展開되고 있다. 사실상 1983년의 UN총회에서는 말레이지아의 提案으로 南極에 관한 決議가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계속 檢討하자는 데에 그쳤고, 실제로 계속적으로 檢討되고 있지만, 이것은 이해가 對立되어 쉽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現實을 반영하고 있을 따름이다.

#### ◇ 맷는 말

南極을 둘러싼 기득 이해당사국들과 여타 국가들간의 對立은 앞으로 國際社會에 또 하나의 先・後進國들간, 강대・약소국들간의 紛爭의 씨를 안고 있다. 南極開發은 막대한 資源과 高度의 科學・技術이 필요하여 이미 南極에 進出하고 있는 나라들이 기득이해를 保護하려는 立場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主權을 주장한 나라들은 쉽게 양보할리가 없다. 예를들어 아르헨티나는 1977년 11월에 이미 解產이 가까워진 基地隊長의 妻를 南極에 보내서 自國市民의 南極出生을 종용해 領土主權을 強化하려는 「妙策」까지 썼다.

中共은 1985년 11월에 처음으로 南極觀測隊를 킹·죠지섬에 상륙시켰는데, 그때 西獨基地隊員들과 희극적인 충돌이 있었다. 얼어굳은 豹권을 축구공으로 이용했다고, 그리고 식량부족으로 豹권을 잡아먹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蘇聯은 6·7개의 常駐基地를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그중 하나가 빙산에 휩싸여 자취를 감추었다. 다행히도 그基地는 떠다니는 빙산속에 있음이 금년초에 인공위성의 카메라에 잡혔다. 이와같은 南極은 그 自然條件이 가혹한 반면에, 鑛物・生物資源의 寶庫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海洋이라 外界의 경우와 같이 國際法上의 管轄問題가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 國際紛爭의 불씨로 남게 될 수 있다.